



보도	배포 시	배포	2026.5.14.(목)
----	------	----	---------------

담당부서	소비자권익보호국 분쟁조정위원회운영1팀	책임자	국 장	정재승	(02-3145-5720)
		담당자	팀 장	서창영	(02-3145-5722)
	보험상품분쟁1국 보험분쟁2팀	책임자	국 장	최성호	(02-3145-5210)
		담당자	부국장	신창현	(02-3145-5214)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1~3등급)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결정

I.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논의 배경

- '26.5.13.(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의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운전자보험과 관련된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일반교통사고의 형사 합의금 분쟁 건에 대하여 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번 조정결정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가입자가 일으킨 일반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급수 1~3급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합의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가입자(교통사고 가해자)의 조속한 일상 경제활동 복귀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분조위 회부 통지 후 신청인이 보험회사와 화해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분쟁을 자진 취하한 여행자보험과 관련한 분쟁 건에 대해서도
 - 여행자보험 가입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의 인과 관계 인정여부 등에 관하여 향후 보험금 지급 심사 등 업무처리에 참고하기 위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II. 금융분쟁조정위원회('26.5.13.) 의결 내용

◆ [의결안건 제2026-3~5호]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1~3등급)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여부

1 사실관계

- 신청인(A·B·C)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피보험자*인 가해자가 일으킨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2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후,

* 피보험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되거나 자배법상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을 보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상품

- 수사기관에 형사입건된 가해자와 합의*하고 피신청인(○○보험사)에게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포함

** 가해자로부터 보험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

- 피신청인(○○보험사)은 가해자(피보험자)가 경찰로부터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 당초부터 공소제기 할 수 없는 사안으로 형사합의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분쟁조정 신청건 요약>

신청인 (사고시점)	사고일	상해급수	종합보험 가입여부	합의일	불송치일
A (만56세)	'25.4.22.	2급 (전치 12주)	○	'25.5.13.	'25.5.22. (합의 9일 후)
B (만75세)	'25.3.6.	2급 (전치 16주)	○	'25.4.14.	'25.4.17. (합의 3일 후)
C (만74세)	'23.7.1.	1급 (전치 10주)	○	'23.11.10.	'23.11.15. (합의 5일 후)

2 쟁점사항 및 논의내용

□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①'자배법상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 및 ②'형사합의'를 필요로 하는 '중상해'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됩니다.

①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 이 사건 특별약관 규정*의 구조는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되거나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라고 되어 있어,

○ '중상해를 입혀'가 '자배법 시행령상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를 수식하는 것인지 약관상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쟁점이 됩니다.

※ [참고]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교통사고 처리지원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①형사합의금 특약의 목적 및 취지*, ②하급심 판결**을 고려했을 때, '상해급수 1~3급'이면 중상해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별개의 독립적인 약관상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보험 가입자는 장래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형사책임을 감경할 목적으로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해급수 1~3급은 신체적 손상의 정도가 높아 그 자체로 중상해 이행가능성이 있는 상해이므로 중상해 판정 전이라도 사건을 조기 종결할 목적으로 형사합의를 진행할 개연성이 충분

** (대전지법 2025. 3. 11. 선고 2024나217362 판결) "이 사건 사고는 일반교통사고인데 피해자인 원고가 중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문언상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중상해에 해당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함에 명백"하다고 판시

② **(형사합의를 필요로 하는 중상해)** 이 사건 특별약관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에 해당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이 사건처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 1~3등급이 발생한 경우,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중상해’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의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차량이라도 형사합의가 없으면 공소제기 대상에 해당*(일반상해의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시 공소제기 미대상)

※ [참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상 공소제기 특례 요약

-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다만,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중상해)는 그러하지 아니함

사고유형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	
	형사책임	합의필요성	형사책임	합의필요성
중상해	형사책임 부담	필수	형사책임 부담	필수
일반상해	공소권 없음	불필요	형사책임 부담	필수

-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중상해’ 범위의 경우 ‘중상해’로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해석하였습니다.

- 분조위는 ①중상해 개념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시점에 중상해 확정을 요구하기 어려운 점, ②수사경과에 따른 형사책임 부담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③형사합의의 의미를 고려할 때 ‘형사책임 부담가능성***’이 있으면 되고 형사책임이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였습니다.

* 중상해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적 개념

** 실무상 수사기관은 치료기간, 노동능력 상실률,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상해’ 기소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사법절차 종료 전까지 형사책임의 부담 가능성 존재

*** 합의 당시 피보험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면 형사합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형사책임이 확정될 것까지 요하지 않음(대구지법 2025.11.20. 선고 2025나302161)

➔ 신청인(A·B·C)이 입은 부상이 자배법상 상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고, 피보험자는 경찰 조사 중 향후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경감할 목적으로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 대상인 '형사합의'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청구취지를 인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토록 결정하였습니다.

III. 금융분쟁조정위원회('26.5.13.) 심의 내용

◆ [보고안건 제2026-1호] 여행자보험에서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 분조위 회부통지 후 신청인이 분쟁을 자진 취하함에 따라 보고안건으로 심의

1 사실관계

- 피보험자는 '24.9.10. 인도 카슈미르 지역의 트레킹 여행을 위해 피신청인(보험사)과 여행자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피보험자는 카슈미르에서 트레킹 여행을 하던 도중 '24.9.19. 낙상하여 현지 병원(카슈미르 및 뉴델리 소재)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 이후 '24.11.11. 국내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25.3.17. 사망*하였습니다.
- * 사망 진단명: 외상성 두개강 내 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 신청인(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25.3.28. 피신청인(보험사)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 '25.6.24. 피신청인은 사고조사를 거친 후 출국권고지역*인 카슈미르에 방문할 계획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면책을 통보하였습니다.

※ [참고]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04년 도입)

▣ 외교부는 매년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의 위험수준을 알리고자 여행경보 발령

여행유의(남색경보)	여행자제(황색경보)	출국권고(적색경보)	여행금지(흑색경보)
신변안전 위험요인 숙지	불필요한 여행 자제	여행취소·연기 권고	여행금지 준수

2 쟁점사항 및 논의내용

- 이 사건 약관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고지의무 위반(출국권고지역 방문)과 보험사고(낙상 후 상해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 본건 약관*은 피신청인이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를 증명하도록 증명책임을 전환*하고 있으므로,
 - * 원칙적으로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출국권고지역 방문)과 보험사고(낙상 후 상해사망) 간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상법 제655조)
 - 피신청인이 피보험자의 출국권고지역 방문사실이 본건 낙상 사고에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결국 카슈미르가 출국권고지역으로 지정된 원인과 본건 낙상으로 인한 상해사망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참고] 인과관계 증명 관련 약관

■ 본건 약관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분조위는 카슈미르가 출국권고지역으로 지정된 사유는 ‘테러 및 정정 불안’이므로 이와 무관한 트레킹 중 낙상한 사고는 우연한 사고로서 인과관계가 없으며,
 - 인과관계 증명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으나, 낙후된 의료시스템이 출국권고지역 지정과 관련 있고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한 피신청인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향후 여행자보험의 고지의무 위반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본 건의 논의 결과를 참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IV.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이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분조위 결정은 ‘상해급수 1~3급’이 독립적인 약관상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 ‘형사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고여부 판단과 관련된 ‘중상해’ 범위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한편,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신청인 A·B·C 및 피신청인 ◎◎보험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됩니다.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

- 금감원은 금번 조정 및 논의결과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특약, 여행자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에 대해 보험사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 향후에도 분조위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소비자권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